

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전자우편 : minji07@korea.kr

- 팩스 : (02) 2100 - 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전화 (02) 2100 - 6387, 팩스 (02) 2100 - 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8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9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범준이앤씨(주)(윤민주)

나. 전화번호 : 02-3487-8771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91호

3. 명칭 : 저융점개질유황을 혼합한 수경성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4. 내용요약

<분야>

토목 / 도로 / 교면포장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교량의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면포장을 효과적으로 시공하고, 그 성능의 증진을 위해 저융점개질유황을 사용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배치플랜트 및 이동식믹서를 이용하여 타설함으로써 부착성, 균열저항성 등의 물리적성능과 염해, 동결융해저항성, 내마모성 등의 내구성능을 확보한 교면포장공법이다.

<범위>

황과 DCPD(Dicyclopentadiene) 그리고 Oligomer를 이용하여 중합한 저융점개질유황(60℃내외)을 사용하여 제조한 수경성유황콘크리트를 정량 공급장치 및 3Way 게이트 방식을 적용한 배치플랜트를 이용하거나 다중오거회전날과 에디셔널믹서가 탑재된 이동믹서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교면포장공법

5. 보호기간 : 2013.02.18. ~ 2021.02.1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564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0.20 공포, '21.4.21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로 포함하는 제3조제5항 신설

1) 중소기업 범위를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포함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전화 : 042-481-4376, Fax : 042-472-7929)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376, 팩스 042-472-7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